

2020년도 제32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12. 1.(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권현영(분과위원장), 박성호, 박정인, 임형주 위원, 홍지만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0-317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803건(안전번호 제2020-160244호~160524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0-160244호는 심의대상 게시물에 이메일 주소와 함께 다수의 댓글들이 달려 있어 불법복제물 전송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를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802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권헌영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32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317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권헌영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 A 위원: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불법복제물이 유통되는 경로를 알려주게 되므로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공개 처리하고 제3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도 같은 규정에 따라 비공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 외 나머지는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 B 위원, C 위원, D 위원, E 위원: 제2호, 제3호 안전에 대한 비공개 의견에 동의함.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명, 사이트명, 업체명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전상정

o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심의 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일본 NTV', '소니픽처스엔터테인먼트', '넷플릭스', '이십세기폭스', '미국 Showtime', '위너브러더스', '미국 CWTV', 'tvN', 'TV조선', 'Google Inc.', 'Adobe Systems Inc.', 'Autodesk Inc.', '(주)한글과컴퓨터' 등임. 이러한 권리자를 위하여 현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위원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위원님들께서는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권현영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26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803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60244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임.

◇◇◇ ◇◇에 '●●●●● ●●●●'이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 ◆◆◆ ◆◆ ◆◆◆와 ㉹㉹㉹ ㉹㉹㉹을 게시하였고 댓글로 이메일을 남기면 음원을 보내주겠다고 하였음.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댓글 내용을 보여주면서) 해당 게시물에 댓글로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면 게시자가 “♥♥♥”, “♣♣♣”, “♣♣♣♣♣♣♣♣♣♣♣♣” 등으로 답변함.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헌영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160244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확인함)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의 댓글 내용, 댓글 개수의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로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가결 의견임.
- E 위원: 이견 없으며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가결 의견임.
- D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 다수의 댓글이 남겨져 있고 게시자가 보내줬다고 댓글에 대한 답변을 기재함.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법상 불법복제물이 전송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시정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C 위원, B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60244호는 게시물

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60245호~160524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발견한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보호원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불법 복제한 컴퓨터 프로그램, 게임, 음악, 만화, 영상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그 중 일부 안건을 설명하겠음.

(방송 '식스센스'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웹하드 사이트에서 국내 예능 프로그램 식스센스 7화를 107포인트에 판매 중임. 식스센스 7화는 tvN에서 2020. 10. 22. 방송되었음.

(방송 '위쳐'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모바일 웹하드에서 미국 드라마 위쳐 시즌1 전체를 스트리밍 형식으로 240포인트에 판매 중임. 위쳐는 넷플릭스에서 2019. 12. 8. 공개하였음.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웹하드 사이트에서 국내 영화를 175포인트에 판매 중임. 해당 영화는 2020. 10. 21. 개봉했고 2020. 11. 25. VOD 서비스를 시작함.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14,900원에 볼 수 있음.

심의위원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안건 목록 및 증거자료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권헌영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심의안건 목록과 모니터링 자료를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0-160245호~160524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A 위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가결 의견임.
- D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가결 의견임.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 E 위원, C 위원: 이견 없으며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권현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160245호~160524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가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건번호 제2020-160244호~160524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권헌영 분과위원장이 제32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32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12. 8.

분과위원장 권헌영

위원 박성호

위원 박정인

위원 임형주

위원 홍지만